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內事件

商標拒絕査定

〈大法院 第2部 判決〉(1986. 3. 11)

事件番號 : 85 후 97

裁判長 : 김 형 기

關與法官 : 신 정 철 · 정 태 균 · 이 정 우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 : (주)낙소 (대표 : 송재문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特許廳長
3. 原審決 : 特許廳 1985. 8. 31字, 1984年 抗告審判(絶) 第55號 審決
4. 主 文 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부담으로 한다.
5. 理 由 :

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어떤 商標가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著名하게 되면, 그 商標를 주지시킨 商品 또는 그와 類似한 商品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指定 商品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企業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産業分野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生産 販賣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 구조에 비추어 著名商標權者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使用商品이 生産 販賣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出處나 營業의 오인,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열려가 있는 것으로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10號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이 拒絕되어야 할 것이다(당원 1984. 12. 11. 선고, 84 후 51판결; 1984. 9. 11 선고, 83 후 43 판결등 참조)

이 事件에서 原審은 本願商標는 英文字와 한글자 “Canon”을 2단으로 횡서 표기하여서 된 文字商標이고 인용상표 또한 英文字로 “Canon”이라 횡서하여서 된 商標임을 알 수 있어서, 兩商標는 한글자 “케논”의 유무의에는 英文字가 완전 同一하여서 그 외관이 유사하고 英文字 “Canon”은 英文發音 표기에 따라 “케논”이라 호칭된다

할 것이어서 兩商標는 칭호에 있어 同一하고, 관념 또한 同一하여 전체적 객관적으로 살펴 볼 때 극히 類似한 商標라 하겠고, 또 인용상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需要者에 알려진 상표임을 알 수 있다고 한 후 兩商標는 각 그 指定商品은 다르다 하더라도 本願 商標를 그 指定商品에 사용할 경우 需要者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商品과 出處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열려가 있다고 하여 결국 本願商標는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10號에 해당되어 登錄이 拒絕되어야 한다고 判斷하고 있는 바 原審의 이와같은 조치는 앞서 본 先實施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그 인정 판단은 正當한 것으로 證明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나 판단유탈,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理由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일치된 의견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 (☞)